

# 가입신청서\_ 기업인터넷전화

2016. 08. 15



Tel. 1644-3949 Fax. 0505-448-9000 E-mail. lg070@naver.com

개통희망일 20 년 월 일

## 가입자 정보

<b>고객명/대표자명</b> (법인명/대표자명)	/		<b>고객주소</b>
<b>사업자등록번호</b>	법인등록번호		※ 법인만 기재
	생년월일		※ 개인만 기재
<b>담당자 정보</b>	성명 유선전화	이메일 휴대폰	@ □ 개통현황 알림문자용
<b>대리인 위임</b>	위임받는 사람 생년월일	연락처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신청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기재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 및 단말기(장비)구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b>위임하는 사람</b> 서명/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b>청구정보</b>	<b>통합청구</b> □ Y (기존 청구계정번호: U+ 표기판) □ N	<b>청구방법</b> □ 이메일 □ 휴대폰문자	@ □ 우편 ※ 휴대폰 번호 기재(법인명의 번호 제외)
<b>납부정보</b>	<b>납부자명</b>	<b>사업자번호</b> (생년월일)	
<b>방법</b> □ 계좌 □ 신용카드 □ 지로	<b>예금주</b> (카드주)	<b>은행/계좌번호</b> (카드사/카드번호)	/ 카드 유효기간 년 월
<b>납기일</b> □ 22일 □ 26일 □ 말일	서비스 요금을 매월 본인의 계좌(카드)에서 지정된 출금(결제일)에 인출하는데 동의합니다.		<b>예금주 (카드주)</b> 서명/인 ※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 기본서비스

<b>가입구분</b> □ 신규 (회선) □ 번호이동(회선)	<b>약정기간</b> □ 3년 □ 2년 □ 1년 □ 무약정 □ 기타(년)	<b>번호선택</b> 희망번호: 070- - -
<b>서비스 신청</b> □ 신규(회선) □ 추가(회선) □ 재가입(회선)	<b>교환기 불필요</b> □ 센트릭스 (IMS, 고급형, 일반형) □ 일반형 □ IP-PBX ※ 고객사 자체 보유	<b>교환기 필요</b> □ DCS □ 고급형 DCS □ sDCS 모델명: 장비할부: □ 일시불 □ 1년
<b>단말</b>	<b>전화기 구매</b> 모델명: (대) □ 할부 □ 일시불 □ 3년 □ 2년 □ 1년	<b>모뎀 임대</b> □ 4포트(대) □ 8포트(대) □ 16포트(대) □ 32포트(대) □ E1(대) □ 2E1(대)

## 요금제

요금제	정액제 명	회선 수	대상번호	정액 추가	부가요금제 명	회선 수	대상번호
□ 종량제 □ 정액제			~				~
			~				~
			~				~
			~				~

## 부가서비스

<b>부가서비스</b>	□ U+ Biz 스카이프 베이직 (□ 3년 □ 2년 □ 1년 □ 무약정) □ ARS (□ 1단계 □ 2단계 □ 3단계)	□ U+ Biz 스카이프 스탠다드 □ CRM Pro	□ 통화연결음 □ 기타( )	□ 레터링
<b>114번호 안내</b> □ Y (우측선택) □ N	□ 전화번호부 등록 □ 안내 대표번호: □ 업종: ※ 상세 주소 안내 동의(□ Y □ N)	<b>보증보험증권 (TM업체)</b>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년	

## 특기사항

특기사항

## 안내 및 동의

본인은 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bizuplus.co.kr)에 링크된 각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해지 불가', '서비스 종료 해지 시 할인반환금 지급(기업인터넷전화 약관 참조)'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조건 등 신청서 및 신청서비스의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명시와 충분한 설명을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약정기간 이내 중도해지 시 약관에 의거하여 해지일의 다음달에 판매장비 임대장비에 대한 할인 받은 금액(무약정 일시불 판매기 기준)과 면제받은 설치비가 청구되고 이용기간 동안 할인 또는 면제 받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할인반환금 신청 시 일시정지 기간은 이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가입 시 제공 받은 혜택에 대한 할인반환금(할인 또는 면제 받은 서비스 요금/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의 무약정 기준 일시불 판매기) 해지일의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 정액 요금제를 약정기간 이내 중도해지 시 할인 받거나 무상으로 받은 단말기 금액(정액 요금제 가입으로 추가 할인 받은 금액)이 할인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혹은 날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신청인 / 가입자(대리인)** 서명/인

**첨부서류**

- 법 인: [본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개 인: [본인] 신분증
- ※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 통장사본 추가

[대리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 명의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명의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서비스 약관 주요 내용 기업인터넷전화

2016.08.15



아래 내용은 이용약관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한 내용으로, 회사 홈페이지(http://biz.uplus.co.kr)에 등재된 이용약관이 적용기준이 되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이용 약관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의 적용]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은 LG유플러스 전화서비스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이용신청의 승인]

- ① LG유플러스는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며,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승인 전 사전 고지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이용신청의 불승인]

- LG유플러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③ LG유플러스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④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통관규약 등에 따라 채무 불이행징계(정보통신 요금납입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금융기록정보, 금융질서 관리장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⑥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⑦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⑧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⑨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LG유플러스의 의무]

- ① LG유플러스는 제14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 및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정기점검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될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련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사위위원회와 요청이 있는 경우
  2. 전자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 ④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목적 외의 불법수집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 외의 소비자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지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⑥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법률상담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LG유플러스는 불만요청,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⑧ LG유플러스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 ⑨ LG유플러스는 제14조 ①항 8,9,10,11조 및 제19조 ②항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대상자와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된 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발송량 발송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도는 문자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⑪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보이소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⑫ LG유플러스는 보이소피싱 등으로 인지도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⑬ LG유플러스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청구하고 관리합니다.

###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부대장비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된 번호 및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사전 소홀로 타인에게 의해 부정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LG유플러스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서비스 사용자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정보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고의로 보이소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

- LG유플러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합니다)을 정하여 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발명달 요금을 최초 납입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LG유플러스가 설치 또는 대역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전화 또는 단말기를 정당한 절차상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4. 단말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제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LG유플러스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승인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로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국제전화 불법호출 및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9.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11.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2.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고의로 보이소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5.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6.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7.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출로 확인하는 경우

### [일시이용중단]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LG유플러스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개월 초과시 고액의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됩니다. 일시 이용정지는 착발신이 모두 중지됩니다.

###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서비스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이용자수 변경, 납입장비변경)의 변경
  3. 단말기의 설치장소 변경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LG유플러스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④ LG유플러스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5. 신규 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 6.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 8. 휴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휴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이용자로부터 부활 청구가 없는 경우
- 9. 사회외의 안면접촉 및 미팅요청을 저해하는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⑤ 장기계약할인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받은 이용고객이 고객 귀책사유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 받은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요금의 산정]

- ①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월요일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산일 및 변경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과요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LG유플러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 이자를 반환하거나 정정자에게 대한 합의를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과소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 ①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LG유플러스에 통지한 때(그 전에 LG유플러스가 그 사실을 알 경우는 알지 못 할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 [변호비용]

-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인터넷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내전화 화상요금 또는 인터넷전화요금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변호비용"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변호비용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용자가 인터넷전화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2. 변호비용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변호비용 개통 한도 후 변호비용 등록 수수료로 변경 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에게 변호비용 등록 수수료로 LG유플러스 정기요금정수서에 포함되어 청구하거나 즉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시내전화번호로 변호비용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4. 변호비용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G유플러스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호비용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6.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사전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 고의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용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조항

\*무선 IP 폰 또는 DCS장비 (이하 '단말기'라한다)의 구매와 유플러스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말기의 할부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약정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제1조 [할부매매계약의 성립 및 조건]

- ① 할부매매는 구매자가 유플러스의 U+기업070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됩니다.
- ② 할부매매는 구매자가 금융거래 신용이 정상인 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정보 (정보통신 요금체납지 포함)에 등록된 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구매자는 단말기 대금을 일시 또는 12개월/24개월/36개월 중 하나의 할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소유권의 제한]

구매자는 할부대금을 완납할 전에는 유플러스의 승낙이 본 계약에 의하여 할부 구매한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구매자의 의무]

- ① 구매자는 할부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플러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구매자는 할부금액을 완납하기 전에도, 자동제계좌, 결제할 신용카드 등 본인 변경되었을 때 즉시 유플러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해제로 인해 유플러스로부터 통지 혹은 송부된 서류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구매자는 할부금액 불입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 제4조 [할부금 납입방법]

- ① 구매자가 납입해야 할 할부금의 월 납입금은 유플러스의 서비스가 개통된 다음 달부터 납입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할부기간의 최초납입금(이하 '도래하기 전'이라 함)도 나머지 할부금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월납입금의 납입 중에 구매자가 유플러스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정지 하고자 할 경우도 구매자는 월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구매자가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유플러스의 서비스 이용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한 채무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플러스는 구매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 무액부터 우선 충당합니다.
- ④ 할부금이 제1항에 정한 납입일까지 정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약정기간내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U+기업070서비스 해지 시 잔여할부금(정기 약정 조건으로 할인제공된 경우 할부 원금에서 기납부액을 차감한 잔액)과 할인받은 금액 모두를 해지일의 다음달에 일시에 납입해야 합니다.
- ⑥ 유플러스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유플러스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리 잘못된 것은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 제5조 [포함 · 반출 · 수리]

단말기에 대한 교환, 반출, 수리, 수리보증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 보증기간에 따릅니다.

### 제6조 [지연손해]

구매자가 납입일까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유플러스는 연체금액의 월2%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익월에 부과합니다.

###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 ①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유플러스는 잔여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시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5일 이내에 구매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거주하는 경우

### 제8조 [계약의 해제]

구매자가 납입금을 연체하여 유플러스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였으나, 구매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플러스는 본 약정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구매자의 철회권]

- ① 구매자는 할부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부판매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의 철회는 위 기간 내에 구매자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된 서면을 유플러스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구매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하지 못합니다.

### 제10조 [매수인의 항변권]

- ① 구매자는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플러스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약정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단말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말기의 인도 등의 시까지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단말기가 하자당부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 유플러스 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유플러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12조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 유플러스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